



옥 천 군

선 람	기관의 장



제1120호 2019. 7. 16.(화)

【조 례】

- 옥천군 조례 제2802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1
- 옥천군 조례 제2803호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9
- 옥천군 조례 제2804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옥천군 조례 제2805호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28
- 옥천군 조례 제2806호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34
- 옥천군 조례 제2807호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40
- 옥천군 조례 제2808호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5

【규 칙】

- 옥천군 규칙 제1376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47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19-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48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3호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49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3호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50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19-643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1
- 옥천군 공고 제2019-659호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81

회 람										
--------	--	--	--	--	--	--	--	--	--	--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김대중



옥천군조례 제2802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
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군비 1억 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민이 신청한 사업

제4조(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옥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의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

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
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팀장 ○○○주무관
○ 내용	‘00.00.00		○○○국장 ○○○실과소장 ○○○팀장 ○○○주무관 <관련자>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등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예시) 설계변경 및 공사 중지 사유 등 명확히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 순으로 실명 기재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인

옥천군조례 제2803호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옥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군과 협약을 맺고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진흥 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과 남부권 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군은 관광협의회에 속하여 관광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6조에 따라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3.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 운영
4.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8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관광안내소

제9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위촉

제11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1조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

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군수는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관광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관광자문위원회

제16조(관광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시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인사
3. 지역관광에 조예가 깊은 학계 인사
4. 그 밖에 지역관광에 관심 있는 관내 기관·단체인사 및 주민

④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18조제3항제1호, 제2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관광사업의 등록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김대중



옥천군조례 제2804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후단 중 “전일”을 “전일(前日)”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천사랑상품권 :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의 주차장 사용료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한 시설사용료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지급 시 지급 가능금액으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또는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약개시일로부터 7일전에”를 “예약개시일 전월 24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시설 사용료 징수)”를“(시설 사용료 징수 및 지역상품권 환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옥천군에서 발행한 옥천사랑상품권을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휴양림내”를 “휴양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전화 등으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금액			비고
			요금감면 (30% 비수기)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집	24.1㎡ (4인)	1실/1일	39,000	55,000	70,000	
	43㎡ (6인)		42,000	60,000	85,000	
	50㎡ (8인)		60,000	85,000	110,000	
	67㎡ (15인)		102,000	145,000	190,000	
	100㎡ (20인)		140,000	200,000	245,000	
	133㎡ (30인)		210,000	300,000	400,000	
산림문화휴양관	23.4㎡ (4인)	1실/1일	35,000	50,000	70,000	
	35.1㎡ (6인)		49,000	70,000	100,000	
	47.5㎡ (8인)		63,000	90,000	140,000	
	46.8㎡(8인특실)		70,000	100,000	160,000	
	52.6㎡(4인특실)		105,000	150,000	180,000	
대회의실	359.55㎡	4시간	160,000	200,000	300,000	※기준초과 1시간당 30천원 추가 징수
단체식당	118.44㎡	1일	160,000	200,000	200,000	※ 사용시간 : - 9:00 ~ 21:00
전용테크	360㎡	1시간당	40,000	50,000	50,000	
야외음악당	1개소	4시간 이내	- 평일: 80,000(옥천군민: 56,000) - 주말·공휴일 : 120,000			※ 사용시간 : - 9:00 ~ 22:00 ※ 공공기관, 단체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무료
		4시간 이상	- 평일: 100,000(옥천군민: 70,000) - 주말·공휴일 : 150,000			
정자	1동	1일	10,000	10,000	20,000	※ 성수기 - 7. 1. ~ 8. 31.
파라솔·테크	1조	1일	10,000	10,000	20,000	
대형파라솔	1개	1일	5,000	5,000	10,000	
천막	1동	1일	5,000			※ 본인지참
텐트(타프포함)	1개	1일	4,000			※ 본인지참
치유숲길/치유정원시설물	3km/1개소		무료			※ 사용시간 - 9:00 ~ 18:00
주차장	경차(1,000cc이하)	1대/1일	1,000			
	소형(15인승이하)		3,000			
	대형		10,000			
지역상품권환원	사용료 100천원 이하	1실	5,000원 옥천사랑상품권 1매 지급			※ 숙박시설 사용료에 따른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시설 계약자 지급
	사용료 100천원 초과		5,000원 옥천사랑상품권 1매 추가 지급 (사용료100천원 증가될 때마다 1매 추가)			

[별표 2]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횟수	입 증 서 류	비 고
다자녀(옥천군)	50% / 3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 미성년자 3자녀 이상
다자녀	50% / 1회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30% / 1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30% / 1회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업무협약	30% / 제한없음	사용 협조 공문 또는 기관회원 증명서류	
장애인	30% / 1회	장애인등록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대상
군민	30% / 3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비수기 한정
주차료 면제	제한없음	해당 증명서류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관련

※ 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중복 적용 불가

- 사용료 감면 혜택은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

※ 감면 적용 시 입증서류 제출

- 입증서류 제시: 군민 할인, 주차료 면제

※ 요금 감면액 100원 단위 절사

※ **주차료 면제 대상자:** 옥천군민,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장애인(등급제한 없음), 숙박시설 이용자, 공무수행자

[별표 3]

시설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1.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기준

-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환급한다.

2. 관리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배상기준

-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및 배상 기준

-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어 우리군 지역에 기상경보 발령이 발표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4. 사용기간 만료 전 퇴실하는 경우 환불 및 배상 기준

- 관리 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경우에만 사용료 전부 배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u>금요일.토요일 및 주 중 공휴일의 전일로 한다.</u></p> <p>3.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 <u>전일(前日)</u>---</p> <p>3. (현행과 같음)</p> <p>4. <u>옥천사랑상품권 : 옥천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 증권을 말한다.</u></p>
<p>제6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u>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6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u>군수</u>-----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사용료) ① ~ ③ (생 략)</p>	<p>제7조(시설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 한하여 주차료를 면제한다.

⑤ (생략)

제8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의 사용료(성수기 7.1 ~ 8.31 기간 제외)

3.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연 1회에, 제2호의 경우는 연 2회에 한하여 감면 할 수 있다.

1. 옥천군민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단 시설물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2. 옥천군민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

<삭 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의 주차장 사용료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한 시설사용료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지급 시 지급 가능금액으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약) ① 휴양림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3일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군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약) ① 휴양림 -----

-----.

② -----
----- 홈페이지를 통하여

-----.

③ · ④ (현행과 같음)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김대중



옥천군조례 제2805호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 및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국·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 지원, 보건용 마스크 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6조(교육 등)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제안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등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김대중



옥천군조례 제2806호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 방안 강구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읍·면 관할 구역 외로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목적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관리

제10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회의실(다목적실)
2. 어린이집
3.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실(강의실)
4. 컴퓨터실
5. 건강관리실
6. 체력 단련실
7. 관리사무실
8. 방송실
9. 찜질방
10. 기타(창고 등)

② 회관의 시설은 유관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2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회계) ①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용

제15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장은 회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 기간은 관장이 결정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

제17조(권리양도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8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회 관 명	위 치	비고
1	동이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2	안내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3	청성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4	청산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5	
5	이원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이원면 신흥4길 17-5	
6	군서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494	
7	군북면 다목적회관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16-9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김대중



옥천군조례 제2807호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8.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① 군수는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 확인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옥천군조례 제2808호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축·재건축 : 개소 당 1억 3천만 원 이내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 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p> <p>1. <u>신축·재건축</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건축 연면적 85㎡ 미만 :</u> <u>7천만원 이내</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건축 연면적 85㎡ 이상 13</u> <u>3㎡ 미만 : 8천만원 이내</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건축 연면적 133㎡ 이상 :</u> <u>10천만원 이내</u></p> <p>2.·3.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 -----.</p> <p>1. <u>신축·재건축 : 개소당 1억3</u> <u>천만원 이내</u></p> <p>2.·3. (현행과 같음)</p> <p>③ <u>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u> <u>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u> <u>적용하지 않는다.</u></p>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옥천군규칙 제1376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7월 16일

옥 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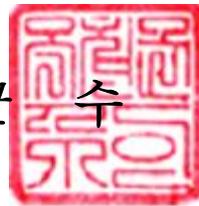
시 행 자	상호및명칭	
	대 표 자	김 창 예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51-15, 2층 202호(월계동,정은빌라)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하천[금산천]
점 용 개 요	위 치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269-2번지
	점용면적	24㎡
	점용기간	2019. 07. 16. ~ 2023. 12. 31.
	목적및사유	토지의 점용[단독주택 진출입로]
문의처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 (043) 730-3525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수



1.사업의 목적 : 비생산성 임야를 영농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지로 개간
(농지조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연번	사업 내용	위 치	면적 (㎡)	기 간	소요액 (천원)	시행자	비고
1	개전	옥천군 매화리 산23	890	2019.5.22.~2021.5.31.	5,474	조동춘	

3.사 업 효 과 : 비생산성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함.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수



1.사업의 목적 : 비생산성 임야를 영농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지로 개간
(농지조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연번	사업 내용	위 치	면적 (㎡)	기 간	소요액 (천원)	시행자	비고
1	개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산29	2,283	2019.7.9.~2021.6.30.	3,080	주재홍	

3.사 업 효 과 : 비생산성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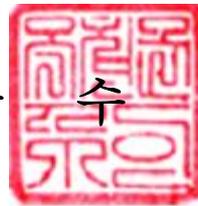
옥천군 공고 제2019-643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의 제명을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지방자치단체별 용어 통일(안 제2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안 제7조)
-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상 정비(안 제9조)
- 수색·압수등의 금지 예외 사유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13조)
- 세무조사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제19조) 등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

- 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 (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 (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5조(조사대상자의 구분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

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0조(중복조사 금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

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15조(조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분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

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1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6조4항1호에 따라 직접조사하거나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의 경우 “엑셀” 파일로 제출하실 법인은 공직자통합메일(이메일) “OOO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는 “□” 내에 “√”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기간 사업연도별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옥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373-809 충북 옥천군 · 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재무과

※ 문의사항 : 전화 043) 730-3202 / 팩스 043) 731-2486

※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은 부족시 복사하여 사용가능하며, 옥천군 재무과(☎043-730-3202)로 전화주시면 이메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정기조사 제출서식 목록

1. 공통 제출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연도별 결산보고서 ⇒ 제본·편철된 것 일체
- 각 사업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 제본·편철된 것 일체
- 각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 계정명, 자산(물건)명, 취득일자, 수량, 취득(장부)가격, 상각액 등이 기재된 세부 명세서
- 각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계정별원장(보조장)
 - 토지(용지), 건물, 시설(구축)물, 차량운반구, 건설(중기)장비, 건설중인자산 등 계정
- 각 사업연도별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신고)내역서
- 각 사업연도별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별 세부(산출)내역서
- 최근 5년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에 한함
 - 사업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제54호서식(부표포함)[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건축물관련 도급공사 원가명세서 및 계약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급, 위탁운영, 임대차 등) 사본

2 추가 제출서류 (건설업 법인에 한함.)

- 조사대상기간내 준공된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서 및 준공건물의 용지계약서 사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기타 건축물 신(증)축과 관련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조사 작성서식 목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옥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 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 | |
|---|---|
| 기 | 타 |
|---|---|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 |
|----------|
| 법인세법 98조 |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103조의 13 세율(소득세의 100분의 10)}$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년)

사업장	군 읍면 로	사업장명	
-----	--------	------	--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기 타	법인세법 제98조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옥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수시 고용인 급여 포함)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 포함)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종업원수(관리,생산,임시) + 수시종업원수(당월의 일별 고용인원수 합계/당월 일수)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4년~2015년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2016년 이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016년 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50인)에서 월평균급여액(1억3,500만원)으로 변경

주) 급여총액은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급여가 기록되고 있는 장부 참조 : 제조경비장(생산직), 일반관리비대장(사무직), 판매비장(판매직), 건설중
인자산계정(직영공사 인부임), 시공비, 운반비 등 고정자산의 각 계정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년)

사업장명

(단위 : 원)

구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합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①계														
	연장차량														
② 비과세소득	관리														
	②계														
③ 종업원수	생산														
	입시														
	수시														
	계														
과세표준 ④ = (① - ②)															
급여지급일															
④ 산출세액 ④ ×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옥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부 사용내역 등을 연면적별로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구분 참조

과 세 대 상	비 과 세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화장실, 창고 ◦ 무허가건물, 임대건물 ◦ 강습소, 수강소 기숙사 ◦ 공장현장사무소(1년이상) ◦ 코니탑(1년이상)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 건물이 없는 기계장치(수평투영면적) ◦ 콘테이너(천막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시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 -기숙사, 합숙소, 사택, 체육관, 구내식당, 의무실,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대피시설 ◦ 무기고, 탄약고 ◦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사업소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년 ~ 년)

(단위 : 원, m²)

사업연도 (7월1일기준)	사업장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③기타	소 계 (㉡)					

<비과세면적 중 ‘③기타’ 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

사업연도	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	사용면적(m ²)	사업연도	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	사용면적(m ²)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관						
압수·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옥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 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상 호(법인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 목록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옥 천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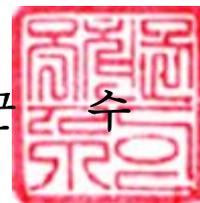
규 칙 안	의 건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을 위촉하고자 관내 지역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수



1. 모집분야 : 읍·면 지역의 주민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모집인원 : 0명 이내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사 입지 기준 선정, 최적지 선정 등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다.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바. 평소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군민

※ 참고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선정기준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
- 나.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에 한함)
-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관련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17. 7. 16. ~ 7. 31.
-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다. 접수처 :
 - 우)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재무과(1층)

e-mail : n6758@korea.kr

- 라. 참고사항

- 우편 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이메일 접수자는 접수 확인 필수)

8. 심사 및 통지: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가.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바. 위원회 명단이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043-730-3232)로 문의 바람.
- 끝.

공개모집 지원서

①접수번호		위원회명	육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②응모분야	
-------	--	------	---------------	-------	--

가. 인적사항

						사 진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영 문					
생년월일	(만 세)					
③주 소	직 장	(우)				
	자 택	(우)				
④연 락 처	직 장	tel	fax			
	자 택	tel	fax			
	핸드폰					
	E-mail					
⑤학 력	기 간 (부터 ~까지)	학 교	전공(세부전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⑥자 격 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 · 관리기관			
⑦주 요 경 력	기 간 (부터 ~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현재, 타 지자체(중앙부처 포함) 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 내 타 위원회 위원일 경우 반드시 기재요망

나. ⑧주요 연구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수행 기간	연구 년도	비 고

다. ⑧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발 표 논 문 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저자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등)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옥천군 청사건립추진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응모가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모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지원자 성 명 : (서명)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 E-Mail 제출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서 작성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공개모집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응모분야" 는 해당 모집분야명 기재
 - ③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 ④ "연락처"는 직장, 자택, 핸드폰, 이메일 기재
 - ⑤ "학력"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 ⑥ "자격증"은 당해분야 취득자격을 정확히 기재(사본 첨부 제출)
 - ⑦ "주요경력"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하며, 우리군 타 위원회 및 타 기관 위원(중앙부처, 타시·군 위원회, 충청북도 위원회)일 경우 반드시 기재
 - ⑧ "주요 연구수행 실적" 및 "논문 발표실적"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 추천서(대학교, 협회)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첨부
	(한자)	E-mail		
직장명(부서)	대학교는 학부와 과단위까지 기재요망			
주 소	(자택)	우편번호) 주소)		
	(직장)	우편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직장)	
			(팩 스)	

2. 학력 및 전공

취득 학위	학 교 명	학과명	전공분야
기타 자격면허	-		

3.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비 고

4. 추천분야

전 문 분 야	세 부 전 공	비 고

추천서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상기인을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합니다.

2019. . .

소속(기관)장 (인)

옥천군수 귀하

